

의안번호	2200961
의 퇴 인	정희용 의원
회 답 일	2024. 6. 28.
추계번호	24F1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수는 2025년 28.8억원, 2029년 28.8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44억원(연평균 2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제6조 제4항)	-28.8	-28.8	-28.8	-28.8	-28.8	-144.0	-28.8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4항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을 취득하거나, 농지 등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기한을 연장 - 적용기한: 2029.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4항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4년 중 통과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
-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실적은 최근 5년('18~'22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의 귀농가구 수 추이를 볼 때, 귀농가구 수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혹은 해당 농지 등의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귀농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므로 귀농가구 수의 증감 여부는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최근 5년간 귀농가구 수의 증감추이 또한 일정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을 취득하거나,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

-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며, 귀농일 이전 1년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2021년 세법개정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 취득 농지 범위가 확대(직접 경작 목적→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의 농지)되고 취득세 감면 요건이 변경(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등을 취득한 경우→농지 등의 취득일부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었음

(2) 추계방법

□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간 평균 감면실적: 28.8억원
 -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 2022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증감추세가 일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도 △18.2%~13.1%로 불규칙함

[표 4]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실적	32.4	26.5	26.0	29.4	3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 귀농가구 수의 증감 여부는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최근 5년간 귀농가구 수의 증감추이 또한 일정하지 않음

[표 5] 귀농가구 수: 2018~2022년

(단위: 가구)

	2018	2019	2020	2021	2022
귀농가구수	11,961	11,422	12,489	14,347	12,411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각 년도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수는 2025년 28.8억원, 2029년 28.8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44억원(연평균 2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제6조 제4항)	-28.8	-28.8	-28.8	-28.8	-28.8	-144.0	-28.8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